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0년 7월 일 건설 위원회	에 대해 품질시험 또는 검사실시를 요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포괄적 규 정을 시간경과 또는 장소의 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는 자 재로 구체화함으로써 발주자의 과도한 품 질시험 또는 검사실시 요구 등으로 예상 되는 건설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KS제품 등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신속한 자재 공급으로 원활한 건설공사 추진을 도 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발주자의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실시의 예외적 기준을 명시한 본 개 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번호	603	2000년 7월 일 건설 위원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27	2000년 7월 일 건설 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 회 제1차 건설위원회 (2000년 6월 2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건설안전관리 본부장 최재범)			
가. 제안이유 100억 원 미만의 공사로서 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의 필요성이 없는 소규모 공 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위탁·시행하게 함 으로써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제3자 에 의한 공사감독을 도입, 감독의 효율성 및 부조리 개연성을 예방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위탁하여 처리하는 소규모 공사의 범위 및 소규모 공사에 대한 수탁자 감독업무 범위			

<p>를 정함.(안 제2조).</p> <p>① 소규모공사의 범위</p> <p>시장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 미만 공사로써 전면 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 중 다음 각각의 1에 해당하는 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시설물공사 : 서울특별시도로등 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 ○ 조경공사 :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 기계설비공사 :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치수공사 : 하천·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 공사 <p>② 감독업무의 범위</p> <p>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p> <p>□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수탁기관 선정,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와 위탁자와의 협약체결, 사무의 수행에 대한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p> <p>3.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용훈) 가. 먼저 제안이유 및 제정목적(안 제1조)에 대한 검토입니다.</p> <p>□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전면 또는 부분 책임감리 시행대상이 아닌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중 일부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p>	<p>□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및 시행규정을 마련하여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건설현장의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p> <p>나.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조별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p> <p>□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주요시설물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 등 용어의 내용을 건설기술관리법령과 건설기술기본법 등에 규정된 내용을 토대로 정의한 것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p> <p>□ 안 제3조는 본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p> <p>□ 안 제4조(업무의 위탁)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① 도로등 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주요시설물의 설치·유지관리 공사와 ② 조경공사 ③ 기계설비공사 ④ 치수공사로 한정하고 이를 공사의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그 동안 관계 공무원들에 의해 직접 수행되어 온 소규모 건설공사의 감독업무 중 부조리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외부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 감독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p> <p>다만, 공사감독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책임성 확보와 지금까지 감독업무를 담당하여 온 관계공무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조정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업무추진 추이에 따라 신중한 검토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p> <p>□ 안 제5조(운영지원)는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수탁자에 대한 위탁 운영 소요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합니다.</p> <p>□ 안 제6조(준용규정)은 소규모 공사 감독</p>
--	--

<p>업무 수탁자의 합리적 선정 기준과 위탁 취소 등에 대하여는 서울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일반규정인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제16조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이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서울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동 조례 제6조 내지 제8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은 공공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의 설립취지 등에 비추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p> <p>3. 종합 의견입니다.</p> <p>□ 건설기술관리법 관계법령에 의해 감리전문회사의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중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주요시설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 등에 대한 감리업무의 시행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및 민간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서울시에서 발주한 이들 소규모 건설공사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부조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건설 관계공무원의 인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업무체계의 확립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세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p> <p>□ 다만, 조별 내용 검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공사 감독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위탁 운영에 따른 재원 추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건설공무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단계적 감축 운영 등이 업무추진 추이에 따라 반드시 병행하여 검토 및 조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p> <p>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99. 10. 30)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부실 건설공사의 예방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p> <p>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p> <p>5. 토론요지 : 없음</p> <p>6. 심사결과 : 원안가결</p>	<p>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p> <p>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p>.....</p> <p>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p> <p>서울특별시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소규모공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 미만 공사로써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p> <p>2.“감독업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p> <p>3.“주요시설물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p> <p>4.“조경공사”라 함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p>
---	---